

문서번호 : 13-03-통일위원회-01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장언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및 고발장 제출  
전송일자 : 2013년 3월 7일(목)  
전송매수 : 총 8매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및 고발장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무법인 상록(대표자 장주영, 천낙봉)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를 대리하여 지난 2013. 2. 5. 및 2013. 2. 7. 경기 시흥시 소재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현재까지 사실상의 구금상태로 독방에서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차단된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유00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위 유00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170 증거보전 사건에서 2013. 3. 4.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들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면 향후 접견을 하겠다고, 세 번 네 번 약속을 하였고, 당시 검사는 변호인 접견 의사를 확인하는 변호사에게 동일한 질문을 그만하라고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변호인의 비밀 접견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4. 이에 담당 변호사는 2013. 3. 5. 및 2013. 3. 6. 유00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유00가 변호인 접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하였습니다.
5. 검사가 작성한 유00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및 유00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위 유00를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유00로부터 권리 고지사실 및 행사여부에 대하여 자필 확인 및 날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유00는 변호인 접견의 대상 지위에 있지 않다며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신,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신,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6. 이에 국가정보원이 유00가 변호인 접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접견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심각한 조직적 범죄행위로 보이는 바, 2013. 3. 6. 국가정보원에 대한 준항고장과 고발장을 각각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7.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별첨자료>

- §. 준항고장 (3p)
- §. 고발장 (6p)

2013. 3.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천낙봉 [직인생략]**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별첨1> 준항고장

준항고인 법무법인 상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5 영생빌딩 4층  
대표자 장주영, 천낙봉

피준항고인 국가정보원장

### 신 청 취 지

피준항고인이 2013. 3. 5. 및 3. 6. 피내사자 유00에 대한 접견을 불허한 각 처  
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 신 청 원 인

1. 법무법인 상록(대표자 장주영, 천낙봉)은 피준항고인이 2013. 2. 5., 2013.  
2. 7. 피내사자 유00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항고인의 피내  
사자 유00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준항고를 한 바 있습니  
다.
2. 위 유00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170 증거보전 사건에서 2013. 3.  
4. 증인으로 나와 준항고인의 담당변호사 장00으로부터 준항고인 등 변호인들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면 향후 변호인 접견을 하겠다고 세 번, 네 번 약속을 하였

고, 당시 검사는 변호인 접견 의사를 확인하는 위 장경옥 변호사에게 변호인 접  
견 의사를 확인하는 동일한 질문을 그만하라고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변호인의  
비밀 접견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3. 이에 준항고인의 담당변호사 장00은 2013. 3. 5. 및 2013. 3. 6. 피준항고인  
에게 피내사자 유00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2호증 각 접견신청서 및 팩스 송신 보고서 참조), 피준항고인은 위 유00가 변  
호인 접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각 불허하였습니다.

4. 소갑 제3호증의 1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 작성의 유00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4회) 및 소갑 제3호증의 2 검사 작성의 유00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국가정  
보원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위 유00를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위 유00로부터 위 권리 고지사실 및 행사 여부에  
대하여 자필 확인 및 날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준항고인이 위 유00는 변  
호인 접견의 대상 지위에 있지 않다며 준항고인의 변호인 접견을 각 불허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  
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5. 따라서 피준항고인이 피내사자 유00가 변호인 접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를 들어 변호인 접견을 각 불허한 것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  
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  
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  
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  
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2013. 3. 6.

## <별첨2> 고 발 장

준항고인 법무법인 상록

대표자 장주영, 천낙봉

고발인 법무법인 상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5 영생빌딩 4층

대표자 장주영, 천낙봉

피고발인 국가정보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 침해죄로 고발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사 실

1. 증 제1호증의 1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 작성의 유00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제4회) 및 증 제1호증의 2 검사 작성의 유00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위 유00를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위 유00로부터 위 권리 고지사실 및 행사 여부에 대하여 자필 확인 및 날인까지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위 유00의 오빠 유00에 대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증 제2호증 공소장 참조) 위 유00는 위 유00의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되어 있고, 위 유00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국가정보원 및 검찰로부터 내사 내지 수사의 대상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이 되어 계속 조사를 받아온 피내사자 또는 피의자의 신분에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 하였습니다.

3. 위 유00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170 증거보전 사건에서 2013. 3. 4. 증인으로 나와 고발인의 담당변호사 장00으로부터 고발인 등 변호인들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면 향후 변호인 접견을 하겠다고 세 번, 네 번 약속을 하였고 당시 검사는 변호인 접견 의사를 확인하는 위 장00 변호사에게 변호인 접견 의사를 확인하는 동일한 질문을 그만하라고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변호인의 비밀 접견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4. 이에 고발인의 담당변호사 장00은 2013. 3. 5. 및 2013. 3. 6. 피고발인에게 피의자(피내사자) 유00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증 제3호증 및 증 제4호증 각 접견신청서 및 팩스 송신 보고서 참조), 피고발인은 위 유00가 변호인 접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각 불허하였습니다.

5.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 침해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6.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접견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심각한 조직적 범죄행위로 보이는 바, 고발사실에 대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시어 피고발인을 비롯한 조직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아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와 같이 고발합니다.

2013. 3. 6.

고발인 법무법인 상록

대표자 장주영, 천낙봉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